

광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532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망 G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소외 E(피고들의 부)을 상대로 2016. 6. 23. 'E은 H에게 5,163,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17111호)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7. 12. 확정되었다.

나. H은 E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2019. 7. 29.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I는 위 채권을 2020. 12. 10.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E에게 통지되었다.

다. 망 J(E의 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0. 3. 3. 사망하였고, 망 J의 상속인인 처 G, 자녀 K, E, L, M, N은 2020.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전이던 2020. 5. 1. 망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이후인 2020. 5. 26.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20느단671).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5. 20. G(E의 모) 명의로 2020.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20.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E의 자녀들, G의 손자녀들) 명의로 2020.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G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4. 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분(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G(수익자)과 E(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전득자)은 E(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의 내용은 E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E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이전인 2020. 5. 1. 행하여진 E의 상속포기 신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이후인 2020. 5. 26. 수리됨으로써 E의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상속포기 신고 이후인 2020. 5. 1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고 2020.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원고는 또한, 2020. 5. 14. 같은 날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G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고 2020. 5. 20. 같은 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E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상소포기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배를 함으로써 상속인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별지